

『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』

[시행 2015.7.29.] [법률 제13090호, 2015.1.28., 일부개정]

□ 제65조(교육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②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,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,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·교육기간 및 교육과정,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](#)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『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』

[시행 2014.7.8.] [대통령령 제25445호, 2014.7.7., 일부개정]

제8조(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) 기관장은 [제5조](#)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,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(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)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